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및 사후관리 방안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19.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축산환경개선, 축산악취저감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위해 2017년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 사양관리 강화,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천하는 축산농가를 육성·관리하기 위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및 사후관리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추진배경 및 사업추진 기본계획

1. 추진배경 및 목적

- ◎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
- ◎ 가축사육 환경개선으로 농가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하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
 - 가축 사양관리 강화,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천하는 농가 육성
 - ※ (깨끗한 축산농장 정의) 가축의 사양관리(사육밀도·사료), 환경오염 방지,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농촌 지역의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축산농장

2. 사업추진 개요

◎ 사업주관 및 신청대상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주관 : 시·도(시·군·구)
- 신청자격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조)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단, 축산업을 등록한자는 2016년 이전 축산업 등록 농가 중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육업자 [대통령령 제27963, 2017.3.27.]
 - *가설건축물이 포함된 농장의 경우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 확인을 통해 신고 또는 허가 여부 확인
 -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
 - 무허가축사의 경우 적법화를 조건으로 하는 자
 - ※ 지자체는 우선순위를 정하되, 무허가축사의 경우 적법화완료시 우선순위 대상에 포함
 -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사업 신청일로부터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제외
 - *예시: 소독시설미설치, 무허가 축사, 악취방지법 위반 등
 - *단, 과태료 처분의 경우 사업신청시로부터 연2회 이상 처분 받은 자
 - 악취 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단, 민원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 사업기간: '19년 1월~12월

- * 신청서 접수는 연중 실시하고, 3분기까지 검증 의뢰한 농가에 한해 당해 연도 지정(4분기 검증의뢰 농가의 경우 현 장검증은 실시하되 차년도 상반기 지정)

◎ 사업계획량: 750호 지정('19년)

- * 연차별 목표(누계): ('18년) 1,815호 → ('19) 2,500 → ('22) 5,000 → ('25) 10,000
- * 시·도(시·군·구)는 축종, 사육두수 및 사육농가수를 고려하여 연차별 목표량 설정 후 사업추진

◎ 지정기준: 총계 70점(가점 포함) 이상을 획득하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 평가방향

- 돼지, 닭, 오리: 축산악취 및 경관 중심으로 평가

○ 현장평가 채점표 구성

- 출입제한 표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2점)
- 소독시설 설치(5점)
-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목 식재 등(10점)
-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10점)
-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젓소 15, 한·육우, 돼지, 닭·오리 20점)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한·육우 7점)
-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관리 및 착유세정수 관리상태(젓소 12점)
-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관리 및 악취저감시설 관리상태(돼지, 닭·오리 17점)
- 축사 악취저감시설 설치, 가동 여부, 관리상태(돼지, 닭·오리 5점)
-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여부(분무, 살포 및 급이)(5점)
- 사료 보관 및 스킵드러 등 관리상태(한·육우 5점)
- 폐사축 적정관리 여부(축사 처리)(3점)
-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5점)
- 음수통 및 사료통 청결유지(젓소, 돼지 5점)
- 바닥상태 및 교체주기(돼지, 닭·오리 15점, 한·육우, 젓소 20점)
-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3점)

◎ 지정농가 지원

○ (정부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우선선정 대상에 포함

-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

○ (자조금 등 지원) 지자체, 농협 및 생산자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체사업 프로그램 적용 대상을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전환

- * 축사외부 경관개선(입간판, 조경수, 울타리 등), 시설·장비, 미생물제제 지원 등

○ (컨설팅) 축산환경관리원, 농협경제지주, 생산자단체 등에서 사후관리 점검 및 컨설팅 등 지원

- * 지정시 미흡한 농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여 재신청할 수 있게 지원

Ⅱ 깨끗한 축산농장 추진절차 및 일정

계획 통보 (1~2월)	○ 농식품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시·도에 통보
↓	
신청서 접수 (연중)	○ 시·도는시·군·구에 지정계획 통보 ○ 시·군·구는 지정계획 농가 안내(유·무선으로 안내) 홍보 및 축산농가 신청 접수 ※ 신청접수는 연중 실시하고, 3분기까지 검증의뢰한 농가에 한해 당해 연도 지정
↓	
서류심사 (연중) 현장평가 (2월~9월)	○ 시·군·구는 평가 실시 -1단계(신청서류심사): 수시 실시 -2단계(현장평가): 수시 실시 -평가결과 시·도에 제출 * 건축물 대장, 축산업 허가증 및 등록증 첨부 ○ 시·도는시·군·구 평가결과 집계 - 축산환경관리원에 검증 의뢰(매월 말일기준) * 검증 의뢰 시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료 첨부
↓	
농가 검증 (2월~10월)	○ 축산환경관리원은 시·군·구에서 평가한 축산농가 검증 - 검증결과 시·도에 통보
↓	
결과제출 (11월)	○ 시·도는 검증결과 반영 및 보완 - 검토결과 제출: 시·도 →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11월)	○ 농식품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축산환경관리원 협조)
↓	
사업결과 보고 (12월)	○ 사업종료 즉시

※ 신청서 접수 및 서류심사는 연중 가능하나 시기별 신청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기별 계획에 따라 신청 및 현장평가를 추진

※ 상기 일정은 업무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지정농가 사후관리 추진체계

◎ 운영 방향

기본방향

- ◆ (사후관리강화) 지정농가의 20% 현장점검에서 지정농가전체로 확대
 -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 등 내·외부 여건변화에 따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전체로 사후관리 확대
 - * 당초 지침은 전체 농가의 20%를 선정하여 사후관리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함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를 3개 등급(우수, 양호, 보통)으로 구분하여 농가별 연 1회 사후관리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지정농가를 현장평가점수(가점포함)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지자체, 농협·생산자단체, 축산환경관리원이 각 기관별 역할에 따라 연 1회/농가 사후관리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3개 등급구분 기준 및 담당기관

- 우수(지자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중 90점 이상
- 양호(농협·생산자단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중 80점 이상~90점 미만
- 보통(축산환경관리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중 80점 미만
- ※ 대상 농가별로 사후관리 점검을 1회/년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농가 상황(컨설팅시 미흡농가 등)에 따라 추가 점검 가능

◎ 사후관리 기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후 5년간(유효기간)

- * 지정유효기간 마지막 연도에 재평가, '17년 지정농가는 '22년 재평가 대상

◎ 인력 구성·운영

- 지자체 가축분뇨 담당자, 각 기관별로 활용할 지역 전문가 및 축산·환경 분야 현장 전문가 등 전문인력(1인 이상)을 활용하여 사후관리 점검 운영
 - 지자체 : 시·군 담당자가 우수농가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점검 실시
 - * 농가별 1회/년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되 시·군 상황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점검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 시 컨설팅 요청(축산환경관리원)
 - 농협 및 생산자 단체 : 각 기관별로 사후관리 전문위원 구성 또는 각 단체별 지부 등을 활용하여 양호농가에 대상 사후관리 점검(필요시 컨설팅) 실시
 - * 각 기관별로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점검 계획(안) 제출(2월, 농식품부)

-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 분야 현장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보통농가 및 지자체 요청 농가에 대하여 사후관리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추진사항 점검 : 각 기관은 양호·보통농가에 대하여 분기별 사후관리 추진사항 점검회의 실시하고, 지자체는 반기별 사후점검 실적 보고
 - * 각 기관은 분기별 실적을 바탕으로 추진사항 등 점검회의를 실시(분기별)하고, 시·도는 시·군 실적 취합하여 사후 점검 실적 농식품부 보고
- 종합회의 : 지자체, 기관별 사후관리 수행 실적 점검, 컨설팅 개선방안 도출, 차년도 사후관리 대상농가 재설정 등 논의(하반기)

◎ 사후관리 주체별 역할 및 체계

주 체	역 할
농식품부	-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점검 총괄 - 사후관리 점검 계획 통보(농식품부 → 시도)
시·도	- 사후관리 현장점검 추진 및 결과 취합 제출(시·도 → 농식품부) - 사후관리 점검 계획 알림(시·도 → 시·군) 및 시·군·구 독려
시·군	- 각 기관별 사후관리 농가 방문시 협조 - 사후관리 현장점검 추진 및 결과 제출(시·군 → 시·도) * 우수 지정농가 사후관리 점검 실시 (실적제출) 상반기(6월), 하반기(9월)
축산환경관리원	- 사후관리 현장컨설팅 대상 확정 및 농가 배분 - 현장전문가 그룹 구성·운영 - 농가 사후관리 점검 및 컨설팅 추진 * 보통 지정농가 사후관리 점검 실시 - 사후관리 최종 결과보고(축산환경관리원 → 농식품부) * 분기별 실적 취합하여 농식품부 보고(지자체 공유) (실적 취합·보고) 분기별 4월, 7월, 10월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 (한우·한돈)	- 분기별 사후관리 점검 계획 수립·제출(2월, 농식품부) - 현장전문가 및 지부인력 운영 - 농가 사후관리 점검 및 컨설팅 추진 * 양호 지정농가 사후관리 점검 실시 - 분기별 사후관리 점검결과 제출(각 기관별 → 축산환경관리원) - 깨끗한 축산농장 우수사례 농가 발굴 및 홍보 (실적제출) 분기별 3월, 6월, 9월
지정농가	- 사후관리 점검 및 현장 컨설팅시 방문 협조

* 사후관리 기간 : 상반기(3~6월), 하반기(7~9월)

* 상기 일정은 업무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V 지정취소

◎ 지정 취소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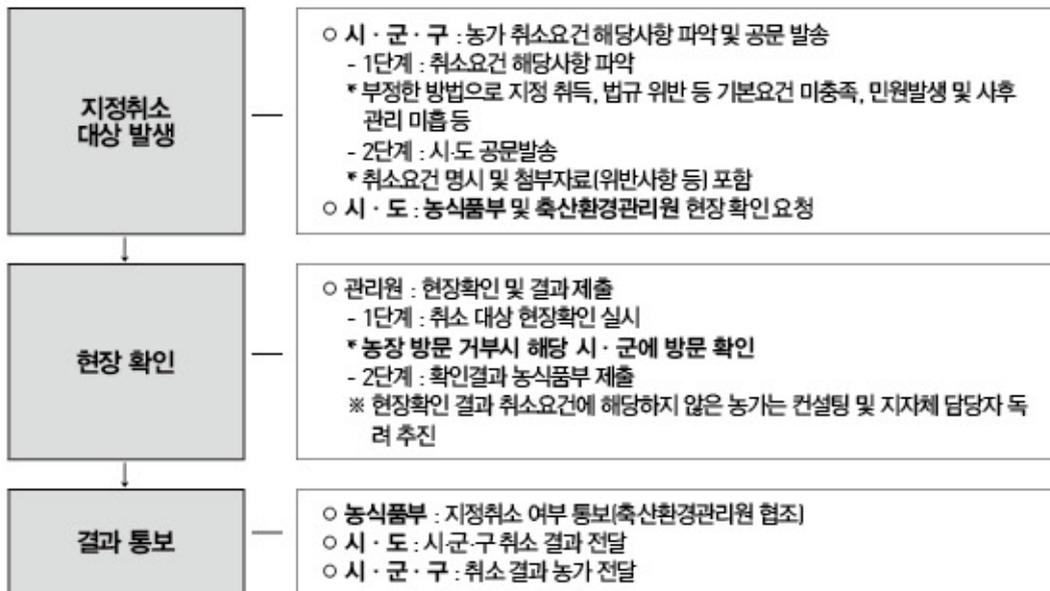
○ 지정취소는 신청자격 위반 및 지정기준 이행 미흡 등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용

- ◆ 거짓이나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 신청자격 및 신청시 기본요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축산법」·「가족분뇨법」·「가족전염병예방법」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 위반
 - * 단, 과태료 처분일 경우에 연 2회 이상 처분 받은 자
 - * 소독시설(방문자, 차량), 가족분뇨처리시설, 축사면적당 적정 사육 밀도 유지, 기록관리(소독기록관리, 가족분뇨처리실태 기록) 미준수
- ◆ 사후관리 기간 동안 현장확인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 현장평가점수가 연속 2회이거나 5년간 총 3회 지정점수 미만인 경우(※ '19년부터 적용)
 - * 지정점수 미만 농가는 다음 연도 현장 확인 의무대상이며, 해당 지자체는 개선을 위한 예산 및 행정 우선 지원하고 관리원은 교육·컨설팅 실시

○ 지정 후 지속적 유지·관리가 어려운 농가 등의 취소 요청시 해당 지자체는 관리원과 협의 후 절차에 따라 취소 진행

○ 지정취소 농가는 취소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 지정 취소 절차



※ 자세한 사항(붙임자료 등)은 한국오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